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8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배진교·장혜영·허종식

이수진비・최혜영・이은주

강은미 • 류호정 • 심상정

이동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 제401조 소정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민사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그러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자회사·계열사 등 특정 회사의 지배력 아래 있는 회사 이사의 경영태만으로 인해 특정 회사와 그 주주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회사·계열사 등의 주주가 대표소송에 나서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은 회사는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음.

나아가, 현재로서는 경영진의 의무위반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이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실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경영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길도 요원함.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수집절차를 거쳐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함.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나아가, 현행법 제400조제2항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연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는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정관을 두지 않았더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400조제2항을 둘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개정안은 위와 같이 현행법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안제401조제1항).
- 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안 제402조).
- 다.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 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3조제1항).
- 라.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이때 지배회사란 피지배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사실상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안 제406조의2제1항 신설).
- 마.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 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안 제4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466조제1항).

- 바.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제399조 및 제400조제2항).
- 사.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안 제542조의8제4항 신설).
- 아.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안 제542조의12),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안 제542조의7),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 중 "第400條와 第403條 乃至 第406條"를 "제400조,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394조제1항 후단 중 "第403條第1項"을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99조제1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은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제401조제1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를 "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399條·第401條 및 第403條"를

"제399조·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402조 중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 주는"으로 한다.

제403조제1항 중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以上에 該當하는 柱式을 가진 株主는"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株主는"을 각각 "주주 및 근로자대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주가"를 "주주 및 근로자대표가"로 한다.

제404조제2항 중 "株主는"을 "주주 및 근로자대표는"으로 한다.

제405조제1항 전단 중 "株主가"를 "주주 및 근로자대표가"로, "株主는"을 "주주 및 근로자대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株主가"를 "주주 및 근로자대표가"로 한다.

제406조제1항 중 "株主는"을 "주주 및 근로자대표는"으로 한다.

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6개월 이 상 보유한 주주는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회사(이하 "피지배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2.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피지배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66조를 준용한다.
- ④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8조의9 중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를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한다.

제415조 중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를 "제401조, 제403조부 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로 한다.

제424조의2제2항 중 "第403條 내지 第406條"를 "제403조부터 제406조

까지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466조제1항 중 "會計의"를 "회사(제406조의2에서 정한 피지배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會計의"로 한다.

제467조의2제4항 중 "第403條 내지 第406條"를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로 한다.

제542조제2항 중 "第398條 乃至 第408條"를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로 한다.

제542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2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

- 의 제5항) 후단 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을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로 한다.
 -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403조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중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 외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각각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상장회사"로 본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자산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5조제3항제1호 중 "제542조의8제1항"을 "제542조의8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42조의8제4항"을 "제542조의8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42조의8제5항"을 "제542조의8제6항"으로 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4條(發起人의 責任免除, 株主	第324條(發起人의 責任免除, 株主
의 代表訴訟) <u>第400條와 第403</u>	의 代表訴訟) <u>제400조, 제403조</u>
<u>條 乃至 第406條</u> 의 規定은 發	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
起人에 準用한다.	<u>의2</u>
第394條(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第394條(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관한 代表) ① 會社가 理事에	관한 代表) ①
대하여 또는 理事가 會社에 대	
하여 訴를 提起하는 경우에 監	
事는 그 訴에 관하여 會社를	
代表한다. 會社가 第403條第1項	<u>제403</u> 조제1항 또
의 請求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	는 제406조의2제1항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第399條(會社에 對한 責任) ① 이	第399條(會社에 對한 責任) ① -
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u>법령</u>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	
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이사가 고의 또</u>
	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면) ① (생략)

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 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 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第401條(第三者에 對한 責任) ① 第401條(第三者에 對한 責任)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 ② 법원은 의무위반의 내용 및 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 |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 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그 지시하거나 執 行한 業務에 관하여 第399條· 第401條 및 第403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理事로 본다.

1. ~ 3. (생략)

② (생 략)

第402條(留止請求權)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 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發行 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이상 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 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 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第403條(株主의 代表訴訟) ①發行 | 第403條(株主의 代表訴訟) ① 6개 는 회사에 대하여 理事의 책임 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u>제399조·</u>
<u>제401조·제403조 및 제406조의</u>
<u>2</u>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402條(留止請求權)
<u>67</u> }
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회사
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1以上 | 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회사 에 該當하는 柱式을 가진 株主 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② (생략)

- ③會社가 前項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即時 會社를 爲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④第3項의 期間의 經過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卽時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⑤第3項과 第4項의 訴를 제기한 株主의 保有株式이 提訴후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保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는
<u>.</u>
② (현행과 같음)
3
<u> </u>
주주 및 근로자대표는
4
<u>주주 및 근로자대표는</u>
·.
<u><삭 제></u>
(6)
6

소를 제기하거나 <u>주주가</u> 제3항 과 제4항의 訴를 제기한 경우 當事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는 訴의 취하, 請求의 포기·認諾·和解를 할 수 없다. ⑦ (생 략)

- 第404條(代表訴訟과 訴訟參加,訴訟告知)①(생략)
 - ②前條第3項과 第4項의 訴를 提起한 株主는 訴를 提起한 後 遲滯없이 會社에 對하여 그 訴 訟의 告知를 하여야 한다.
- 第405條(提訴株主의 權利義務) ① 第403條第3項과 第4項의 規定 에 依하여 訴를 提起한 <u>株主가</u> 勝訴한 때에는 그 <u>株主는</u> 會社 에 對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 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 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 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求償權이 있다. ②第403條第3項과 第4項의 規 定에 依하여 訴를 提起한 <u>株主</u> 가 敗訴한 때에는 惡意인 境遇 外에는 會社에 對하여 損害를

<u>수수 및 근로자대</u>
<u>표가</u>
<u>.</u>
⑦ (현행과 같음)
第404條(代表訴訟과 訴訟參加, 訴
訟告知) ① (현행과 같음)
2
주주 및 근로자대표는
第405條(提訴株主의 權利義務) ①
<u>주</u> 주 및
<u>근로자대표가</u> <u>주주 및</u>
<u>근로자대표는</u>
2
<u>주주</u>
및 근로자대표가

賠償할 責任이 없다.

第406條(代表訴訟과 再審의 訴) ①第403條의 訴가 提起된 境遇 에 原告와 被告의 共謀로 因하 여 訴訟의 目的인 會社의 權利 를 詐害할 目的으로써 判決을 하게 한 때에는 會社 또는 <u>株</u> 主는 確定한 終局判決에 對하 여 再審의 訴를 提起할 수 있 다.

② (생략)<신 설>

第406條(代表訴訟과	再審의	訴)
①		
주 및 근로자대표	<u> </u>	

② (현행과 같음)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회사(이하 "피지배회사"라한다)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 2.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
 집단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지배 회사의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 면으로 피지배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66조를 준용한다.
- ④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4 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 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의2, <u>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u>,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 한다.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u>第401條外</u> <u>第403條 乃至 第407條</u>의 規定 은 監事에 準用한다.

第424條의2(不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 ① (생 략)

② <u>第403條</u> 내지 <u>第406條</u>의 規 定은 第1項의 支給을 請求하는 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생 략)

第466條(株主의 會計帳簿閱覽權) ①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 3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 또 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467條의2(利益供與의 금지) ① ~ ③ (생 략)

<u>402</u> 조부터 제406조까지, 제
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第415條(準用規定)
제401조, 제40
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
의2 및 제407조
第424條의2(不公正한 價額으로
株式을 引受한 者의 責任)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
③ (현행과 같음)
第466條(株主의 會計帳簿閱覽權)
①
회사(제406조의2에서 정한 피
지배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
로 會計의
② (현행과 같음)
第467條의2(利益供與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第403條 내지 第406條의 規定은 第3項의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는 訴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42條(準用規定) ① (생 략)

② 第362條,第363條의2,第366條,第367條,第373條,第376條,第377條,第382條第2項,第386條,第388條乃至第394條,第398條乃至第408條,第411條乃至第413條,第414條第3項,第449條第3項,第450條外第466條의規定은淸算人에準用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④ 7 (생 략)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 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 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제403소부터 제406소까지
<u>및 제406조의2</u>
<u>.</u>
第542條(準用規定)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u> </u>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 <삭 제> 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 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 (8) (생 략)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 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 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 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 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 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 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7) • (8) (현행과 같음)

례) ①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 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 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 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 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 서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 <삭 제>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 | <삭 제>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 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 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 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 ③ (생 략)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403 조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추천 한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의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u>야 한다.</u>
<u>⑤</u>
<u></u>
성하여야 하며, 제2항제5호 또
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u>⑥</u>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및 근로

 시켜야 한다.
 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저 등) ① (생 략)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 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 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 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 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166 1111 14 7 64
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
<u>보를</u> .
세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
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
<u>사들과 분리하여</u>

3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
4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설>

<u><신 설></u>

	감사위	원회	위원	이 도	는	사
외이/	<u> 사를</u>					

⑤·⑥ (현행과 같음)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이 경우 "최대주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상장회사의 의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자산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상장회사는 제368조의4제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為) ① 第・② (생략)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542조의8제1항</u>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 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 우
- 3. <u>제542조의8제5항</u>에 따라 사 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 우

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	기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 또는	서
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	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1
• ② (현행과 같음)	
3	
1. <u>제542조의8제1항 및 제4</u> 형	<u>-</u>
	- —
2. <u>제542조의8제5항</u>	
	- —
	- —
_	
3. <u>제542조의8제6항</u>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